

2026 회계연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

(도시정비신속추진단)

2025.11.24.

전문위원 송 세 창

1. 제안이유

- 2025년 11월 1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2026 회계연도 예산(안)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6년 예산(안)	2025년 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세 입	0	0	-	-
세 출	803,094	841,491	△38,397	-4.6%

※ 세입, 특별회계, 기금 : 해당사항 없음

3. 세입예산(안) 현황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2026년 예산(안)	2025년 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계	0	0	-	-
일반회계	0	0	-	-
특별회계	0	0	-	-

※ 세부내역 : 해당없음

세입예산(안) 검토의견

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세입예산(안)은 편성 내역이 없음.

4. 세출예산(안) 현황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2026년 예산(안)	2025년 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계	803,094	841,491	△38,397	-4.6%
일반회계	803,094	841,491	△38,397	-4.6%
특별회계	0	0	-	-

5. 세부사업 구성 및 규모(일반회계)

[표1. 지역균형발전개발]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5년 예산	2026년 예산	증감액	증감률(%)	비고
모아타운 사업	12,500	4,200	△8,300	△66.40%	일반운영비 대폭 감액
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	7,800	6,900	△900	△11.54%	기존 사업 규모 유지 (일반운영비 감액)
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지원(신규)	0	6,290	6,290	100.00%	신규 안전점검 사업

[표2. 균형잡힌 도시개발]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5년 예산	2026년 예산	증감액	증감률(%)	비고
재개발 공모사업 지원	621,480	616,350	△5,130	△0.83%	후보지발굴· 정비계획·용역비
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 사업(신규)	0	31,000	31,000	100.00%	신규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설립 지원
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및 아카이브 구축	21,200	12,732	△8,468	△39.94%	교육·홍보 예산 감액
재개발 공모사업 운영	10,500	14,228	3,728	35.50%	조건부 선정지 타당성검토 확대
재건축사업 지원	9,270	6,400	△2,870	△30.96%	일반운영비 감액
역세권사업 지원(신규)	0	16,292	16,292	100.00%	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원

□ 세출예산(안) 검토의견

※ 단위 : 만원(천원단위 반올림)

-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6년도 세출 예산(안)은 2025년 예산대비 **△4.6%** (**△3,840만원**) 감액된 총 8억 309만원으로, 이 중 정책사업비 7억 1,439만원 [지역균형발전개발 1,739만원(모아타운사업 420만원,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690만원,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지원 629만원), **균형잡힌 도시개발 6억 9,700만원**(재개발 공모사업 지원 6억 1,635만원, 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 사업 3,100만원,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및 아카이브 구축 1,273만원, 재개발 공모사업 운영 1,423만원, 재건축사업 지원 640만원, 역세권사업 지원 1,629만원)]과 행정운영경비 8,870만원으로 구성됨.

- **신규 편성 사업은 총 5,358만원으로 확인되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**

- **소규모주택정비 안전점검 지원(629만원)**

- 공사장 · 시설위험시설물 점검 강화 목적
- 생활안전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

- **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 사업(3,100만원)**

- 신속통합기획 및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목적
- 주민동의 확보 · 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 높음

- **역세권사업 지원(1,629만원)**

: 역세권 정비 · 주택공급 · 생활SOC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

- 증액 편성된 사업은 재개발 공모사업 운영 1개 사업으로,
2025년 1,050만원에서 2026년 1,423만원으로 373만원(35.5%) 증액됨.
: 조건부 선정지·미선정지 타당성 검토 및 개략계획(안) 수립 수요 확대 반영

- 감액사업은 2025년 6억 7,225만원에서 2026년 6억 4,658만원으로
총 2,567만원이 감액되었으며, 주로 일반운영비·행사비 등을 조정한 것임.
 - 모아타운사업(△66.40% △830만원 감액 → 420만원) : 일반운영비 대폭 감액
 -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(△11.54% △90만원 → 690만원)
 - 재개발 공모사업 지원(△0.83% △513만원 → 6억 1,635만원)
: 후보지발굴·정비계획·용역비
 -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및 아카이브 구축(△39.94% △847만원 → 1,273만원)
: 교육·홍보 사업
 - 재건축사업 지원(△30.96% △287만원 → 640만원) : 일반운영비 감액

6. 검토결과

-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·특별회계
세입·세출 예산안은 신규·증액 사업을 통해 안전·공공성·역세권 개발
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 기존 사업 운영비를 조정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
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사료됨.

- 한편, 동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(구비) 재원으로 편성된 바, 중기 재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국·시비 보조금, 특별교부세 및 정비사업 관련 기금 등 외부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구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아울러, 지방의 예산편성과 의결이 관련 법령·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 의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, 본 예산(안)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¹⁾와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²⁾, 제36조의2³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⁴⁾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.

1)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2) 제36조(예산의 편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·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[전문개정 2011. 8. 4.]

3) 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 “성인지 예산서”(性認知 豫算書)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12.>
-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1. 3. 8.]

- 4) 제42조(예산의 편성)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 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.